

인권과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회복의 권리에 관한 연구

데오 반 보벤(Theo van Boven)

1. 희생자의 관점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의 고통은 종종 무시되는 것 같다. 많은 사회가, 또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희생자들의 고통을 주변적인 문제로 축소해 왔다. 그들은 관련된 문제들을 다소 당황스럽고 불편한 것으로 여긴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마 의아해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역사와 경험은 우리에게 일정 정도 설명을 제공해 준다. 국제적 차원에서, 희생자들의 고통은 종종 국제적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주로 국내적인 것이므로 국가적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체로 과거에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 많은 사회가 자신의 국민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가해진 불의와 악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게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많은 사회에서 과거와 맞붙는 것은 분열을 초래하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몇몇 집단, 특히 정치적 지도자, 군대 등을 적대케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에 행해진 잘못에 대한 배상이 사회의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와 국제관계에서 인권의 침해는 너무도 큰 것이어서 그 문제를 다룰 법적, 물질적 수단이 부족하거나, 혹은 전혀 부적절한 경우들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와 기관, 정치조직, 그리고 개인들은 종종 과거에 잘못이 행해졌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은 많은 장애들을 직면한다. 이러한 장애들은 그 본질에 있어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심리적인 것이며, 때로는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다른 한편, 때로는 희생자의 관점이 수십년 동안의 무시와 침묵의 시간 끝에 주목을 끌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희생자의 고통은 민간단체들과 다른 관심있는 집단들에 의해 주장되어졌다. 실제로 UN인권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승인하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즉, 인권과 자유침해 희생자들의 배상, 회복에의 권리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존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인권조직의 결정과 견해들을 고려한다. 이 글에서 나는 이들 각각을 살펴볼 것이다.

- 인권, 범죄방지, 범죄재판, 인도주의적 법규와 관련된 국제규약(2부)
- 몇몇 국제인권기구의 관련결정과 견해(3부)
- 처벌하지 않은 문제(4부)

- 원칙과 방향의 정립(5부)

2. 관련된 국제규약

A. 국제인권규약(세RP적, 지역적 인권기구)

세계적, 지역적 인권기구들은 모두 개인에게 가해진 인권침해의 행위에 대해 모든 개인이 적절한 국가사법재판소에 의해 “효과적인 구제”의 권리를 가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은 「세계인권선언」의 조항8에도 포함되어 있다.

“효과적인 구제”의 개념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3)(a)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폐지선언」의 6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몇몇 인권기구들은 더 구체적으로 “법에 따라 배상받을 권리” (「미국 인권협약」 10조), 혹은 “적절한 배상에의 권리”(「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정」)21조(2)라고 언급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인 것은 ‘배상에의 권리를 강제할 수 있는’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9조(5)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규약]의 5조(5)이다. 이 와 비슷하게 [고문 및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 비인격적 대우나 처벌금지규약]은 고문의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할 것과 “가능한 한 충분한 회복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에의 권리를 강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B. 범죄방지와 범죄재판에 관한 규범

범죄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보조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들이 「범죄희생자와 권력남용에 대한 기본적 정의 원칙선언」(1985년 11월 29일의 총회결의안 40/34)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선언」은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 1) 희생자들은 그들이 당한 해악에 대해 즉각적인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 배상을 요구함에 있어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 3) 범죄자나 제3자들은 희생자나 그들의 가족 혹은 부양가족들에게 공정한 배상을 해야한다. 그러한 배상은 재산의 반환, 혹은 손해나 분실에 대한 재정적 지급, 희생의 결과로써 초래된 비용에 대한 지급, 서비스의 제공과 권리의 회복을 포함해야 한다.
 - 4) 배상이 범죄자나 다른 원천으로부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때는 국가가 재정적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5) 희생자들은 필요한 물질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이 「선언」은 또한 정부가 범죄사건에서 여타 형벌에 덧붙여, 배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L관행, 규제, 법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9)

C. 국제적 인도주의 법규

「지상전(地上戰)의 법과 관습에 대한 헤이그 협약」 3조는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협약 당사자가 배상을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차 헤이그 협약」의 조항41도 개인들에 의한 휴전조항의 위반시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정 4개안」도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행위의 경우 “어떠한 고위의 협약당사자도 그 자신이나 다른 고위의 협약 당사자가 초래한 책임으로부터 자신들을 면제할 수 없다.” 즉, “의도적인 살인이나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취급 - 신체와 건강에 고의로 막대한 고통과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생체실험을 포함하여 - 그리고 군사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으며 불법적이고 마구잡이로 행해진 재산의 몰수와 파괴 등의 경우”와 같은 심각한 위반행위의 경우이다.

「전쟁포로의 처리에 관한 제네바 협정」 68조는 전쟁포로의 배상요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전시(戰時)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55조는 점령권력이 “어떠한 징발된 물자에 대해서도 공정한 가치가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정서 I」(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정」 추가의정서이며, 「국제 군사갈등의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의정서」)은 91조에서 협약이나 이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한 측은 “배상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국제인권기구의 관련결정 및 견해

A. 인권위원회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의 임의 의정서」 하에서, 인권위원회는 협약에 제시된 어떠한 권리든지 국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로부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임의 의정서의 넷째문단, 조항 5에 “견해”로써 나타나 있다. 위원회가 협약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규정에 대한 침해를 발견한 후에는 국가측에 침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배상의 근거는 협약의 셋째문단, 조항 2인데, 이에 따르면 각 국가측은 협약에 규정된 바대로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배상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규정은 협약의 다섯째 문단, 조항 9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체포나 억류의 희생자인 사람은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섯째 문단, 조항 14는 오심의 결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규약을 검토해 볼 때 희생자들이 받도록 되어 있는 적절한 배상, 유사한 침해의 재발방지에 목적을 둔 배상과 위원회의 견해에 의해 요청된 배상과 관련하여 관련국가들에 의한 사후검토의 문제 사이에는 명확한 연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리나 자유를 침해받은 사람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국가측에 있음(규약의 셋째 문단, 조항2)에 관하여 위원회는 국가가 침해를 배상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과 아울러, 요청되는 배상의 구체적인 종류를 침해의 Itjdrur과 희생자들의 상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권위원회는 국가측이 다음의 의무하에 있음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

- 1) 진상을 조사할 것.
- 2)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3) 책임자로 판명된 사람들을 재판할 것.
- 4) 희생자들에게 규약의 규정과 보장에 따른 취급을 할 것.
- 5) 희생자들에게 의료적 조치를 제공할 것.
- 6) 희생자들과 그(녀)의 가족에게 배상을 지급할 것.

배상을 지급할 의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1) 희생자(실종자) 또는 그 가족에게 그가 겪은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배상
- 2) 남편에게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 배상
- 3)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에게 적절한 배상
- 4) 고통을 초래한 잘못에 대한 배상
- 5) 희생자가 비인간적인 취급으로 인하여 겪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와 고통에 대한 배상
- 6) 유족에 대한 배상

이러한 측면에서 두가지 관찰이 가능하다. 첫째는 위원회의 관점에서 볼 때 배상의 양이나 성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신체적 상처나 손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나 손상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종의 경우에 위원회가 가족 성원들 자신이 겪은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그들이 배상을 받는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 성원들은 그 희생자 당사자에게 가해진 상처 때문에 배상을 받는다고 보는 것인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배상의 방지적 측면은 인권위원회가 국가로 하여금 “유사한 침해가 미래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빈번히 요청하는 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규약의 규정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생명에의 권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예방적 조치로 관련 국가가 법률을 개정하여 그 권리를 마땅히 보호하도록 촉구한다.

B. 미대륙간(美大陸間) 인권법정(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미대륙간 인권법정」은 혼두라스에서의 무력안보군대에 기인한 실종과 관련한 몇몇 사건들을 다루었다. 사건의 막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Velasques rod riguez 사건에 대한 법정의 판결에 특별히 언급하겠다.

「미대륙간 법정」은 「미국인권규약」의 제 1 조에 포함된 의무를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즉, 규약에 공인된 자유와 권리를 그 관할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행사하도록 국가측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의무의 결과로서, 국가는 규약에 공인된 권리의 어떠한 침해라도 방지, 조사, 처벌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시도하고, 침해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보장된 대로의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국가는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권 내에서 행해진 침해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며, 책임자를 규명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며, 희생자에게 확실히 배상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

이와 같은 「법정」의 접근 방식은 인권위원회의 접근과 매우 유사한데 논의된 대로 방지의 의무와 회복의 의무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방지적 조치가 마땅히 우선권을 갖고 강조되는데, 이는 한 되의 방지가 한 말의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법정」이 언급하고 있는 배상의 수단들 중에 범해진 침해의 조사와 죄인의 처벌, 적절한 배상의 지급 등이 차례로 언급되어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상은 사회전체, 책임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해 완전한 정의가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배상의 조치들을 정의실현 정책의 부분을 형성한다.

4. 중대한 인권침해 희생자에 대한 배상의 권리와 관련한 비처벌의 문제

중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의 권리에 관한 어떠한 연구라도 범죄자가 처벌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희생자와 그의 가족, 부양가족들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지급하는데 실패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관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에 대해 그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법이 허가하거나, 사실상의 비처벌이 횡행하는 많은 경우, 희생자들은 배상을 요구하고 받는 것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된다. 사실상, 일단 국가 당국이 진상을 조사하여 범죄의 책임을 지우는데 실패하면, 희생자나 그들의 친지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얻기 위하여 효과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인권규약을 맺은 국가가 이러한 인권규약상의 의무를 따르도록 조치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법적 기구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취해질 조치들을 통일성 있고 일관되게 규정해 놓았다. 이 통일되고 일관된 행동규범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재판,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다. 특별히 「미대륙간 인권법정」의 주목할 만한 결정인 Velasques Roadriguez 사건은 예외 없이 통일되고 일관된 방침을 재확인시켜 준다. 「미대륙간 인권위원회」는 이 판결에 상당히 의존하여 우루과이의 1986년 사면법이 군부통치기간 중 인권을 침해한 공직자들에게 사면을 내린 것은 「미국 인권규약」의 1조, 8조, 25조에 위배된다고 8명의 청원자들의 사례에서 결론지었다. 「미대륙간위원회」는 1991년 10월 4일자 보고서에서 해당국가가 사면법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과거의 사건에 대해 진실을 수립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 조사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원회」는 Velasques Rodrigueq 사건에 대한 「법정」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재차 반복하였다. 즉, 국가가 조사하지 않거나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침해가 처벌되지 않고 희생자는 배상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국가가 관련 권리의 충분하고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기로 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대륙간 위원회」는 정부가 청원자들에게 그들의 침해된 권리에 대하여 공정한 배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UN실무그룹」이 비처벌에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취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실종의 현상에 기여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비처벌일 것이라고 적고 있다. 민간인이건 군인이건간에 인권침해의 범죄자들은 법정에 불려서지 않는 한, 자구적 상호 도움의 형태에 의존케 하며 법에 의하지 않고 멋대로 제재를 가하도록 해, 이것이 다시 폭력의 악순환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비처벌이 만연하는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에서는 중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의 권리는 환상이 되기 쉽다. 정의로운 제도에서는 희생자의 권리를 고려한다면 동시에 범죄자들의 중대한 과오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력할 수 없는 법이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성격을 갖는 많은 장애들로 인하여 희생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유사한 요인들이 비처벌과 관련하여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 - 비처벌과 배상 - 에 대해 국가공동체는 정치적 편리(불편)와 존재이유(raison d'etat)에도 불구하고 국제법률기구에 의하여 입증된 상당히 명확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였다. 국제법률기구에 의한 이러한 결정이 준수되도록 계속 주장하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우리의 의무이다.

5. 원칙과 방향의 정립

나의 확고한 희망과 바램은 UN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이 가지는 배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에 근거하여 일련의 원칙과 방향을 채택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채택되는 그러한 원칙과 방향은 희생자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줄 것이며 그들이 배상의 요구를 제시할 때마다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UN은 1990년대 즉, 10년의 틀내에서 채택된다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지금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원칙과 방향의 충분한 윤곽을 제시할 때가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중요하고 관련이 있는 원칙과 방향의 충분한 윤곽을 제시할 때가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중요하고 관련이 있는 그러한 몇몇 규정들을 언급하겠다.

행위자와 책임의 수준

- 원칙의 문제로서 국가는 인권침해를 배상하고 희생자들의 배상받을 권리를 실현하게 할 책임을 갖는다. 국가들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인권규범을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정부는 중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피도록 법, 제도, 정책 등을 갖춰야 한다.

- UN과 세계적, 지역적 수준에서의 다른 정부간 조직들은 적절한 고려와 국가적 수준에서의 배상의 수향을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침해의 형태

- 어떠한 인권의 침해도 희생자측에 배상받을 권리를 부여하지만, 현재의 목적으로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라는 개념은 적어도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대량학살, 노예제 및 노예제와 유사한 처사, 즉결 혹은 임의의 처형, 고문, 실종, 임의적이고 장기적인 억류, 조직적인 차별.

희생자

- 배상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원칙은 중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의 희생자들의 필요와 요구이다.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는 모든 기관과 기구들은 희생자의 관점을 생각하고 희생자들이 종종 그들에게 가해진 잘못 때문에 장기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희생자의 개념을 정하기 위해서는 「범죄 희생자와 권력남용에 대한 정의의 기본원칙 선언(1985년 11월 29일의 총회 결의안 40/34)」, 특히 「선언」의 다음의 구절들에 주목해야 한다. “희생자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상처,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이나 기본권의 상당한 침해를 포함하여 손해를 당한 사람...희생자라는 용어는 또한 직접적인 희생자의 직계가족이나 부양가족과 고통중에 있는 희생자를 돕거나 희생을 막기 위해 개입함에 있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배상의 형태

- 배상은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미래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수단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상은 적절하고 공정해야 한다.

- 배상의 형태로서 배상금을 현금 등으로 지불되어야 하거나 다른 종류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후자에는 건강, 의료지원, 고용, 주택, 교육, 토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상은 적절한 상황이나 경우에 있어서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거나 무시된 사람들과 집단들의 본질적인 욕구를 긍정적인 행위로서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의 상당한 재배분을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이 범주는 배상의 가치가 화폐로 표현되는 그러한 배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 비화폐적인 배상은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 평화의 대의에 봉사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 1) 진실을 충분히 공적으로 규명하고 사실들을 확증할 것.
- 2) 범해진 침해의 책임을 공적으로 인정할 것.
- 3) 책임자로 판명된 사람들을 재판할 것.
- 4) 희생자와 그들의 친척, 친구, 증언자들을 보호할 것.
- 5) 기념물을 건립하고 희생자에게 경의를 표할 것.
- 6) 희생자들의 사후복지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희생자를 돕기 위한 인원을 양성할 것.

7) 다음과 같은 조치들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할 것.

- 안보군대를 특히 민간의 권한하에 둠으로써 면밀히 통제할 것.
- 군사재판의 권한을 제한할 것.
-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할 것.
- 법률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 억류 등록제도를 개선할 것.
- 안보군대와 법 집행 공직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할 것.

절차와 기구

- 모든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게, 책임자를 재판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배상을 받도록 할 빛을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법적 체계는 그러한 문제들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도 조사를 계속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요구를 해결하는 절차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희생자들의 필요를 존중하고 공정성과 정의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 중대한 인권침해의 배상에 관련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인 법령에 구애 받아서는 안된다. 그들은 신속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아무도 배상에의 요구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된다.

-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센터나 기구의 설립은 인권의 보호에 유용한 측면을 부가할 것이다. 그러한 센터나 기구는 진실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관련된 국가적 경험에 대한 정보, 법, 연구물, 기타 다른 자료들을 수집하고 경험을 교환하고 비교하며, 교훈을 얻으며 지식의 축적을 쌓도록 도와야 한다.

6. 결론적 의견

과거의 인권유린에 대한 배상은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권력남용과 범죄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에게 행해진 손상과 불의를 인정함을 함축한다. 배상은 또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이 명백히 설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배상은 보다 광범한 전략과 정치적, 사회적, 범죄적 정의의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한 정의는 비처벌에 반대하며 국제인권기구에 의해 재차 제시되었듯이, 진상조사와 범해진 범죄와 남용의 책임자들을 재판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배상은 정의를 실현하고 고통을 초래한 과오를 수정할 뿐만 아니라, 방지적 전략과 정책의 일부이다. 반복해서 국제인권기구는 배상의 방지적 측면과 방지할 의무와 배상할 의무간의 밀접한 연계를 강조해 왔다. 중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목적의 정책을 고안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위로와 배상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본질적이다. 그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사람들을 막대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모적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을 더욱 본질적이다.